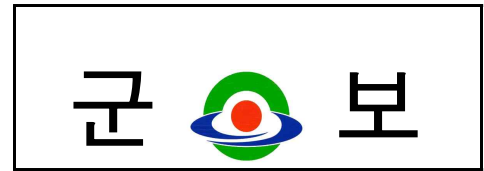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1호 2023. 3. 13.(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안내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3-446호)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예천군 공고 제2023-45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안내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서 및 보상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1. 하 천 명 : 내성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간)
2. 대상토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3.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 2023. 12. 31.
4. 공고기간 : 2023. 3. 13. ~ 2023. 3. 27. (14일간)
5.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054-650-6155)
6.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보상절차 : 보상청구 토지에 대하여 보상대상 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순위에 따라 지급
8. 기타사항
 -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 1. 5.>

접수번호 :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 면적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지 적 공 부 상 지 목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접 수 인	
첨 부 서 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 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 다)		1.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인감증명서 3. 상속인 또는 승계인의 경우 상속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지적도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자르는 선

접 수 증	
접 수 번 호:	
토지의표시:	
청 구 인:	
년 월 일	
접 수 자 (인)	
예 천 군 수	직인

210×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조서 ☐ 보상청구 에 대한 의견서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m ²	지목	
등기부상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 견 서 제 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등	의견서 제출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견서 제출인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천편입토지조서

연번	하천명 (등급)	편 입 토 지				이용상황		소유자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명	주소
	총계		11		18235				
	소계	예천군	11		18235				
1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담암	119	하천	1,425	하천	하천	최*금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2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담암	118	하천	7,060	하천	하천	최*금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3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담암	118-1	하천	1,261	하천	하천	최*금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4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담암	120	하천	585	하천	하천	황*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5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담암	120-1	하천	903	하천	하천	황*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6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월포	331-2	답	162	하천	하천	김*하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
7	내성천 (국가하천)	예천 군	호명 담암	117	임야	6,007	하천	하천	신*수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8	내성천 (지방하천)	예천 군	예천 고평	249-3 5	제방	338	하천	하천	김*식 외 9명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
9	내성천 (지방하천)	예천 군	호명 황지	571-1	제방	107	하천	하천	김*분 외 6명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
10	내성천 (지방하천)	예천 군	호명 직산	1063- 2	하천	328	하천	하천	김*현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
11	내성천 (지방하천)	예천 군	호명 직산	1063- 11	제방	59	하천	하천	김*현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 착한가격업소 :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가 지정한 업소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안 제4조)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따름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등

라.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
-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 준수하도록 함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minjee9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2022. 12. 13.



행 정 안 전 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순 서

I. 목 적	1
II. 지정 대상	1
III. 지정(평가) 기준	1
IV. 지정 절차	4
V. 지정 규모 및 시기 등	5
VI. 사후 관리	5

- < 참고 >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
2.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I 목 적

-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II 지정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붙임 3> 참고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III 지정(평가) 기준(안)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되 저가메뉴 비중, 가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 다만,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
- ※ 관내 착한가격업소 총량은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1 메뉴비중 (25점)

- 착한가격메뉴 개수(25점)
- (지표정의) 전체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착한가격메뉴)' 개수는 착한가격메뉴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업

소의 주요메뉴* 중 하나이어야 함

* 주요메뉴는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를 의미함

※ 다만,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가능

- (평가기준) 4개 이상 25점, 3개 이상 20점, 2개 이상 15점

※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착한가격메뉴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불가

※ (경과조치) '착한가격메뉴 개수' 적용기준은 '23년부터 신규지정업소에 한해 적용하고, 既 지정업소는 1년간('23년) 유예

■ (사전공지) 쏘 지자체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1년 후 착한가격메뉴 기준 미충족 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사전에 반드시 공지 요망

2] 가격 (30점)

○ 가격수준(20점) * 배점은 신규지정 시 30점, 재지정시 20점 적용

- (지표정의)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평가기준) 평균가격 20% 미만 20점, 10% 미만 15점, 5% 미만 10점

○ 가격안정 노력(10점) * 신규지정 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반영)

- (지표정의) 현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한 기간

- (평가기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3] 이용만족도 (20점)

○ 이용만족도(20점)

- (지표정의) 가격, 메뉴,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평가기준) ①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만족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10점)(100점 등 만점 대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 ②업소 친절도·만족도에 대해 평가자, 모니터요원 등 만족도 결과(10점)

※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다수일 경우에는 평균치를 적용

※ 다만, ①의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②의 만족도 결과만으로 평가

4 위생·청결 [20점]

위생·청결상태가 미흡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평가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지표의 점수에 관계없이 미지정 가능

○ 주방 등(10점)

- (지표정의) ①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5점)

②위생복·위생보 착용도, 칼·도마 등 주방용품 소독 여부(5점)

- (평가기준) ①주방 청결도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②위생복·위생보 착용여부(착용 2점, 미착용 0점), 주방용품 소독 여부(소독실시 3점, 미실시 0점)

○ 매장 내(7점)

- (지표정의)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 (평가기준)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 화장실(3점)

- (지표정의)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남녀구분,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정도

※ 화장실이 매장 단독으로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평가 미실시, ‘주방 등, 매장내’ 배점에 포함)

- (평가기준) 화장실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5 공공성 (5점)

○ 공공성(5점)

- (지표정의)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

※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 (평가기준) 모두 이행 5점, 일부 미이행 0점

6 가점 부여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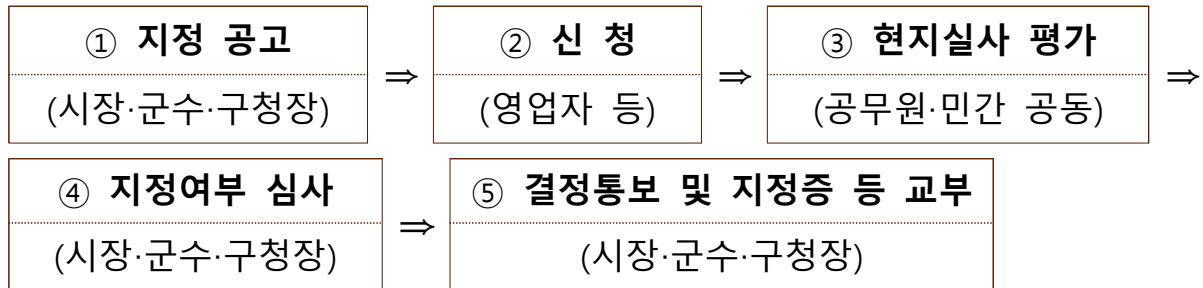
○ 가점 부여(10점)

- (지표정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내역,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평가기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실적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정성평가

IV

지정 절차



1 지정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2 신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3 현지 실사평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정기준(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4 지정여부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

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5] 결정 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신속히 해당 자영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정증·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

V

지정 규모 및 시기 등

① 지정 규모

- 착한가격업소 지정규모(업소수)의 적정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양한 업종이 분포될 수 있도록 관리

② 지정 시기 [일제정비기간]

- 연 2회(6월, 12월)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
 - 다만, 자영업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실정에 따라 수시 지정 가능

③ 재심사 [既 지정업소]

- (정기) 일제정비기간에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 진행
- (수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심사 실시
 - ※ 재심사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④ 착한가격 메뉴 표시

- 업소는 착한가격에 해당하는 메뉴를 이용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메뉴판에 '착한가격메뉴'를 표시

VI

사후 관리

① 업소정보 현행화

- 일제정비기간 종료 후 착한가격업소 정비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조치(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정보 일괄 수정)
 - 시·군·구별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는 지자체별로 반영
- 수시 지정 또는 정비를 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정보 수정 조치

② 지정 취소 후 조치사항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전국/지역단위에 관계없이 지정 불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

□ 재심사 [既 지정업소]

-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가격안정 노력도(10점)’를 평가에 반영
 - 착한가격업소 재지정시에는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배점은 ‘가격(40점)’분야에 반영(가격수준 30, 가격안정노력 10)
 - (평가기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
 - ※ 다만, ‘위생·청결’, ‘공공성’ 항목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생략 가능
- (자진취소 등)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업소명 변경^{*} 등은 미해당), 휴업^{**}의 경우에는 업소 지정취소 조치
 -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

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외
**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가능. 다만, 업주 의견 청취 후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

- (행정처분) 업종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조치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을 의미

□ 행정사항

- 개정지침 적용 시기 : 2023. 1. 1. ~

- 본 개정지침은 '23년부터 신규 지정업소에 한하여 적용하고, 旣 지정 업소는 1년간('23년) 유예
- 모든 지자체에서는 旣 지정된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1년 후 착한가격메뉴 기준 미충족 시 착한가격 업소 지정 취소'**를 사전에 반드시 공지 요망

- 착한가격업소 정보관리 철저

- 업소 신규지정, 지정취소 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를 즉시 현행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http://www.goodprice.go.kr>

-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 인센티브 중단 등 신속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상하수도료 감면 등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중단 등 신속히 조치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안)

□ 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메뉴비중 (25점)	착한 가격메뉴 비중(25점)	■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 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다만, 전 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배점) 신규지정 30점, 재지정 20점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 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20점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10점)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10점)		
위생· 청결 (20점)	주방 등 (10점)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5점)		10점		
	매장 내 (7점)	■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7점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이 아닌 경우 '주방 등' 배점에 포함)		3점		
공공성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100점	
품목비중 (25)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20점)	■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 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다만, 전 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 저가품목(전체품목의 50% 이상)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 저가품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 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20점		
위생· 청결 (20점)	주영업시설 (15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15점		
	화장실 (5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	5점		
공공성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붙임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선 비교표

분야	현행	개선	비고
메뉴비중		■배점(25)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 착한가격메뉴 2개 이상	확대
가격	■배점(45) - 가격수준(20) - 가격안정노력(15)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	■배점(30) - 가격수준(신규지정 시 30점, 재지정 시 20점) - 가격안정노력(재지정 시 10점)	일부 조정
이용만족도		■배점(20) - 업소 이용 전반에 대한 친절도·만족도	확대
위생청결	■배점(30) - 주영업시설(20) - 화장실(5) - 건물 등 환경(5)	■배점(20) - 주방 등(10) - 매장 내(7) - 화장실(3)	축소
품질서비스	■배점(20) - 이용만족도(10) - 운영(5, 복장·위생상태 등) - 시설(5, 이용안내문, 표지판 등)	■배점 없음 - 이용만족도 별도 분야 구분 - 운영은 위생청결(주방 등)에 통합 - 시설은 폐지	폐지
공공성	■배점(5)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배점(5)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유지
기타	■지정 제외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지정대상 명확화 - 기 지침상 제외대상 외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프랜차이즈 법인이 운영하는 업소 명확화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후 심사	구체화

붙임 4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외식

분야	품목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외식 外

분야	품목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가전제품수리비, 자동차수리비,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의료	▶ 건강기기렌탈비, 건강검진비, 치과보철료, 병원검사료, 반려동물관리비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기타	▶ 세탁료, 가전제품렌탈비,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